

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

● 지원개요
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**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**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

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30%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

● 지원대상

① 무급휴업 : 30일 이상 실시, 일정 규모* 이상 무급휴업 실시, 노동위원회 승인

* ▲50% 이상(19인 이하), ▲10명 이상(99명 이하), ▲10% 이상(100명~999명),
▲100명이상(1,000명 이상)

② 무급휴직 : 90일 이상 실시, 일정 규모* 이상 무급휴직 실시, 무급휴직 전 3개월** 이상 유급휴업 실시, 또는 피보험자 20% 이상이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, 근로자대표 합의

* ▲10명 이상(99명 이하), ▲10% 이상(100명~999명), ▲100명이상(1,000명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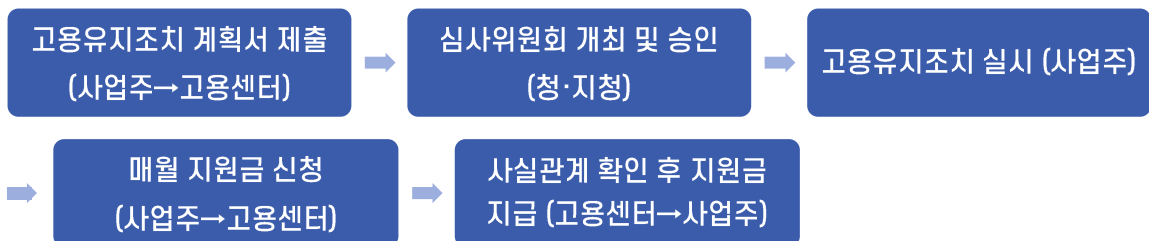
**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전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

● 지원내용

심사위원회가 **근로자 평균임금 50%**(1일 6.6만원)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

-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**매월 10만원** 지원(사업주지원금)

● 지원절차



*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
- 부산고용복지+센터 : 051-860-1923
051-860-1979
051-860-1927
-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: 051-796-7213
051-796-7216
- 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 : 051-330-9954
051-330-9986